

### ●환경부고시제2018-235호

환경부고시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제2018-235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법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질을 말한다.

1.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5퍼센트 이상이거나,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2퍼센트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질
2.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분자량이 1천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25퍼센트 이상이거나, 분자량이 500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10퍼센트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질
3.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질(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질은 제외한다)
4.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에 해당하는 미반응 단량체가 중량비 0.1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질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고시제2018-236호

환경부고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제2018-236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5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재승인) ①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서를 통지받은 자가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승인의 방법 및 사용승인서 교부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27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사용료)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승인을 통지 받은 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조건을 부여하고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료는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 취득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4조(정보의 보호) 규칙 제27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요청자의 신원, 유해성 시험자료의 취득금액 등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3조 관련)

## 사 용 승 인 조 건

**제1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 (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제3조 (사용료의 납부)** 제2조의 사용료를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제4조 (사용료의 반환거부)**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한 유해성 시험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료 하여금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4.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이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6조 (사용승인 취소 시의 보상)** 이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승인이 취소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한국환경공단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재산에 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사용승인 자료의 사용에 관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 사용승인을 받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책임배제)** 한국환경공단은 사용이 승인된 유해성 시험자료의 정확도와 정밀성, 등록과정에서의 해당당국의 등록승인 여부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제11조 (승인서의 해석)** 이 승인서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 ● 환경부고시제2018-237호

환경부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014-241호, 2014.12.30.)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5조제3항”을 “제45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을 “법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3항·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가 법 제45조제3항 및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자료보호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제13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의 “치환기의 명명기준”에 관한 표 이외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총칭명의 명명방법(제8조관련)

1. 탄소원자의 사슬계 화학물질의 총칭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 때 치환기인 사슬계 화학물질의 위치 또는 개수는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개의 사슬계가 포함된 경우는 탄소원자 개수의 범위를 달리하여 명명하여야 한다.

① -C-C- : Alky1 또는 Alkane

② -C=C- : Alkeny1 또는 Alkene

③ -C≡C- : Alkyny1 또는 Alkyne

2. 고리계 화학물질의 총칭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 때 치환기인 고리계 화학물질의 위치 또는 개수는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있다.

(1) 탄소원자로 이루어진 고리계

① 한 개의 고리계 : Carbomonocyclic 또는 Carbomonocycle

② 여러개의 고리계 : Carbopolycyclic 또는 Carbopolycycle